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6일, 박민규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2.23.)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민규의원)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 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에서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수정주요내용

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나.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부칙 제2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에도 적용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도 적용된다.</u>

법률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3. ~ 5. (생략)	제36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5. (현행과 같음)